

CPR

감옥

감옥의 인권 관련 글 모음

1. 장기수의 입장에서 본 우리 교정시설과 처우방식의 문제점; 안재구
2. IBA국제세미나 보고서; 일본의 대용감옥; 박찬운
3. 행형법 개정 및 감옥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 박찬운
4. 재소자 인권, 한 나라 민주화의 잣대; 민주가족 18호
5. 국제인권기준에 비춰본 한국의 행형제도와 개선방안;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6. 재소자의 인권과 처우; 한인섭
7. 감옥과 인권; 유남영

長期囚의 立場에서 본
安在求

자료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B6	4

사람의 자료

長期囚의 立場에서 본 우리 矯正施設과 處遇方式의 문제점

安 在 求

저는 1979년 10월 28일 소위 "남민전" 사건으로 유신독재체제 종식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사건은 그 해 10월 4일 이재문동지가 체포된 날 비롯되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되었으나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때부터 1988년 12월 21일 무기형과 15년형을 선고받은 13명이 가석방으로 출소됨으로써 저의 경우 9년 3개월의 옥고를 치루었고 지금도 공민권 박탈의 상태라서 비록 담 밖에 나왔으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족쇄를 차고 있는 셈입니다.

저의 이번 이야기는 "남민전 사건으로 옥고를 치루었던 반독재민주화 자주적

평화통일운동의 정당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근 10년간의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우리사회의 행형제도 전반에 대해서 특히 정치범 처우에 대해서 제가 겪고 들어서 알고, 몸과 마음으로 느낀 바를 솔직히 말하는 데 있습니다. 대체로 수감생활에서 풀려 나오면 지옥과 같은 그곳 생활을 상기하기조차 싫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에서 유죄 무죄는 접어 두더라도 마지막 인간적 권리는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형자의 처지를 형사정책 연구자들의 모임에서 말하므로써, 앞으로 우리사회의 행형제도의 개선에 이바지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 앞에서 기꺼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하는 부분에는 혹 형사정책학적 입장에서 보아, 그리고 형행행형법 및 그 시행령으로 보아 말이 되지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형을 당한 당사자의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의 행형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I . 사상전향제도

정치범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면 제일먼저 시달되는 것이 사상전향서를 쓰라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을 살게되는 대개의 사람들은 체제에 대한 불평 불만을 말하다가 들어온 사람(막걸리 반공법)이나, 일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지독하게 얻어 맞고 간첩으로 몰린사람들은 그 자체가 사상성이 없기 때문에

소위 교회사들의 위협과 회유로 사상전향서란 것을 쓰고 맙니다.

그러나 자기 신념으로써 운동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은 쓰기를 거부합니다. 북에서 넘어온 사람, 그리고 자기가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신념을 버리지 않기 위해 거부하고,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반정부활동으로 공산주의자로 몰린 사람은 자기양심을 지키기 위해 거부합니다. 그러나 행형당국자들은 이것을 모두 일률적으로 취급해서 사상전향서를 쓰라고 강요합니다.

참말로 사상전향서를 쓰는 사람은 형을 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참말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사상전향서를 쓴다면 이제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그사람을 가두어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상전향서를 쓴 전향자라 할 지라도 유기형을 받은 사람은 그 형을 애누리 없이 다 살아야 하고, 무기형을 받은 사람은 20년이 넘어 25, 26, 27년 그리고 그 이상의 징역을 사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일반재소자는 무기형을 받은 사람은 20년을 넘기지 않고 다 석방이 되어 나갑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으로 징역을 사는 사람은 20년이 넘어도 징역을 삽니다.

이 사상전향제도는 일제 때 만들어진 것이며 일제 때는 사상전향서를 쓰면 곧 석방을 하는 것이 통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사상전향제도는 그것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전향제도가 본격화 된 것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72년부터라고 합니다. 박정희 정권은 밖으로는 7.4 공동성명으로 남북통일문제를 공표하여 남북조절위원회가 서울과 평양에서 열리고 화해의 분위기로 치장했지만 교도소안에서는 당시 ~~700명~~이 넘는 미전향 좌익수(=교도소 용어?)를 전원

전향시키라는 지시를 내려, 그 방법에는 인명손실도 불구한다 하여 엄청난 폭력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교도소 교무과에 제2계라는 것을 두고 중앙정보부에 직결시켜 교회사의 명목으로 다수 인원을 모집하여 전향공작원으로 배치하여, 이들이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통닭구이, 비녀꽃이 등 갖은 고문으로 사상전향을 강요했습니다.

감방사동에 봉사원(소제)라는 명목으로 파렴치범, 폭력범을 배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놀이삼아 미전향사상범을 확대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위협 공갈을 하여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까지 끊어 놓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읍니다. 이들 사상범은 모든 고문을 견디어 냈으나 파렴치범들에게 당하는 고통과 치욕을 이겨내지 못하여 자살을 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고문의 하수인인 교회사에게는 전향 공작비라는 명목으로 전향 1건당 수당을 지불하여 정부는 그들이 재소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방조하고 그로 인한 슬한 만행을 자행케 했습니다.

다음은 그 몇가지 사례입니다.

사례1) 본인의 경우,

1981년 1월 7일 무기징역으로 형이 확정되어 1월 27일 전주교도소에 이감되었을 때 수용된 감방은 미전향좌익수를 수용하는 사동에 있고 이 사동은 둘레가 2m가 넘는 시멘트 블럭담으로 둘러싸인 적은 공간으로 한 쪽에 30평 정도의 운동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방은 가로 1m, 세로 2m, 높이 2m 정도의 관같은 방, 한 쪽 구석에 시멘트로

된 50cm 정도의 폭에 직경 7cm 정도의 구멍이 있어 그것이 변소. 운동은 하루에 30분. 이것도 좁은 운동장에서 두 사람이 하는데 서로 만나지 못하게 거리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돌기. 하도 좁은 공간이라 좀 빨리 돌면 어지러워 넘어질 것 같았고 실제 당시 28년을 살은 김모(60세 가량)라는 정치범이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뇌이혈로 반신불수에 언어능력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맞은 편 넓은 감방에 두 사람의 재소자(같은 정치범)가 간호하고 있는 것은 보았습니다. 몇 년 후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감 후 3일이 되자 담당교회사(전향공작원)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 빨리 그 곳에서 나와야 하는데 전향서를 쓰라고 하였으나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므로 사상전향이란 것이 없다"라고 거절하니 그 후 일주일에 2,3회 불러내어 전향서를 쓰기를 강요하였으나 완강히 거절하였습니다.

몇 개월 후 아버지의 면회시 담당교회사가 아버지에게 한 말이 "이분이 전향서만 쓰면 당장 사면 받는다."라고 하니 아버지의 "그게 무엇이 대단하다고 당장 써주고 나오너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에 화가 나서 교회사의 목살을 잡고 "이놈, 내게는 사기쳐도 참지만 80 노인에게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대판 싸움을 한 적도 있습니다.

최석진(같은 사건 연루자)동지가 급성신우염으로 피오증을 쓰는데 외부병원에 진료를 요구하자 교무과장이 전향서를 쓰라고 강요. 이를 거부하고 그들의 비인도적 처사에 항의하여 무기한 단식투쟁으로 맞섰고 5일 후에는 소장면담으로 외부병원 진료와 넓은 방으로 전방하고 간호할 사람을 배치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나와 최석진은 각각 광주로, 대구로 이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향공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로 하여금 면담을 시켜 줍니다.

이들은 치졸한 반공이론, 지식 및 인격부족 등으로 정치범에게 비웃음만 삽니다. 그러나 정치범들에게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의미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40명 가까운 인원이 대전교도소 15사의 좁은 방에 독거 수용되어 있으며 부채살 모양의 담을 쌓은 운동장에서 1명씩 독거운동을 하고 있고 최악의 처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례 2) 황필규 이영우 두 노인의 자살

황필규, 이영우 두 노인은 각각 고향을 전북, 충북에 둔 노인으로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국가보안법으로 징역을 30년 넘어 살았으며 72년부터 시작된 소위 미전향좌익수의 전향공작으로 지독한 고문을 이겨내고 자기의 사상의 결백성을 목숨걸고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들과 광주교도소에서 2년간 같은 사동에서 살았던 일이 있습니다.

광주교도소로 이감되었을 당시에는 생활처우가 말이 아니었으나 우리들은 이들과 함께 처우개선을 위해 투쟁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바깥사회의 민주화투쟁과 더불어 교도소생활의 처우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범(북에서 내려온 국가보안법 정치범)의 처우를 몰수하기 위한 이유인지 모두 대전교도소에 이감시켜 버렸습니다.

대전교도소에 이감된 후부터는 이들에 대한 폭력적 탄압이 엄청나게 덮어씌워졌고 광주교도소에서 약간의 개선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처우개선을 요구하여 단식투쟁을 하게 되었고 이 투쟁에 대하여 교도소측은 70노인, 80노인을 수갑을 채우고 묶어서 분리수용하여 구타, 폭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 두 노인도 엄청나게 폭행을 당하였고 모욕을 당하여 72년때의 악몽이 되살아나 이제는 살아서 나간다는 생각도 못하여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 살기보다는 죽기를 작정했습니다.

이들 두 노인은 가족이 이 땅에 살고 있으나 72년때의 악독한 전향공작으로 가족과의 유대마저 끊겨졌고, 아무 위로받을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남북의 적대관계만 해소되기를 빌며 세월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교도소에서 당한 엄청난 탄압으로 그 한 가지 세월을 기다리는 희망마저 포기하고 70이 넘은 고령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 동료 정치범의 처우개선의 희생양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비록 목숨은 붙어 있어도 80이 다 되어가는 노인도 7,8명이 아직도 이 격리된 특별사에 있습니다.

(사례 3) 이림 노인의 병사

이림노인은 6.25 당시 서울경북중학교 물리학 교사였는데 북한 인민군의 의용군으로 징집되어 나갔다가 월북하였던 사람으로 다시 남한으로 잠입한 사람입니다.

이 노인도 72년 전향소동 때 못견디어서 사상전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전향 좌익수 특별사동 신세를 면하고 공장에 출역하여 병풍 만드는 도배공으로 일해왔고 글씨 쓰기를 좋아해서 서화반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광주교도소에서 물리교사의 실력으로 열관리기능 자격고시, 용접공기능자격고시, 철공기능자격고시 등 여러 고시를 준비하는 재소자의 수학과 물리를 지도하면서

낙을 보내고 저녁에는 감방에서 글씨를 쓰고 있는 그를 보았습니다.

평소에 심장이 나쁘다고 자기진단하여 약을 쓰고 있었고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교도소측은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약이나 주어서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그런데 86년 봄 어느날 작업장에서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교도소측은 다급해서 외부종합병원에 진찰했더니 간암으로 진단이 났고 증세가 심해 치료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교도소 병사에서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하는 그를 보았습니다.

90이 다 된 형이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족이 있었으나 형은 안타까와했으나 여쩔 도리가 없었고 조카도 노인으로 가족의 모든 권리가 그 아래 증손자에게 있기에 그냥 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과 조카는 죽기 전 약 10일 쯤 해서 형집행정지로 출감하는 이 노인을 병원에 입원시켰으나 가족 중 아무도 간호할 사람이 없었지만 다행하게도 신심이 깊은 기독교 교인 부인이 그 병수발을 맡아서 임종하는 것을 지켜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사례 4) 서 병 노인의 경우

서병 노인은 8.15 해방 직후 서울 용산지구에서 남로당 당원으로 활약하다가 6.25 때 월북하였고 다시 월남하여 국가보안법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하던 중 72년에 전향한 사람으로 88년 10월에 28년만에 78세의 고령으로 출소하였습니다.

이 노인은 전향한 후 공장에서 취역하다가 심장병과 위병에다 고령으로 감방에

들어와 징역을 살다가 병이 더해져서 병사에 있었습니다.

전향한 차로써 너무나 오래 징역을 살아서 당연히 석방되어야 하는데도 교도소 당국은 이 사람의 가족을 못 찾는다고 미루어 왔습니다. 6.25 전에 젓먹이 아들이 있어서 72년에 전향소동 전까지는 더러 모자가 면회를 왔으나 전향공작소동으로 가족이 위협을 당하자 소식이 끊겨졌습니다. 교도소 당국이 치안당국에 연락하면 찾을 수 있는데도 무책임하게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동료재소자들이 교무과 교회사들에게 항의하여 가족을 찾도록 재촉하자 교무과에서 치안당국에 의뢰하여 가족을 찾게 되었고, 요즘 잘 입력된 컴퓨터를 써서 곧바로 찾을 수 있게 되어 아들이 면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 아들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혈혈단신으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다가 겨우 강가를 들게 되었는데 그의 처에게는 부모가 모두 없다고 속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칸방에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처지인지라 아버지를 모실 입장이 되지 못하고 처에게 없다고 속였던 아버지를 그것도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상범을 처에게 알릴 것을 생각하니 아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간에 의논한 결과 우선 교도소 당국에 신원을 보증하기로 하고 석방수속을 밟았다고 합니다. 석방이 되어 교도소 밖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갔으나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여관방에 부자가 하루밤을 잤습니다. 아들은 밤새 고민하다가 아버지의 한달도 못되는 여관비만 놓고 아버지가 잠든 사이 빠져나가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행방이 묘연한 자식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교도소를 다시 찾아 왔습니다. 그리하여 담당교회사를 만나서 석방을 취소해달라고 애걸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석방된 사람을 도로 가둘 수는 없는지라 그 교회사는 투덜대면서도 말을 곳을 찾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교도소 부근에 있는 무연고자를 수용하는 양로원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례들에서 사상전향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1. 사상전향은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사상전향을 한 사람은 징역살이 하는 원인(범죄원인)이 없으므로, 그 사상으로 해서 살인 등 범죄를 해서 사회적 보복(이것도 없어야 하지만)이 필요한 경우 이외는 즉각 석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미전향 좌익수라 할지라도 사회안전법이 폐지되고 감호제도가 없어진 이상 무기수라도 20년 이상 복역한 사람은 석방되어야 합니다. 사회안전법의 감호자들은 대개 유기징역을 살고 전향하지 않은 탓으로 구금당한 자들인데 이들이 모두 석방된 시점에서 전향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20년 넘어 30년 넘어 38년이나 징역을 살고 있다는 것은 행형제도의 형평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3. 흑백논리의 이데올로기로 혈연마저 앗기게 된 사상범에 대해서 하루속히 그 혈연관계가 다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4.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수감된 자들의 생활조건은 즉각 개선되어야 합니다.(독거수용, 독거운동, 독서제한, 신문잡지 구독 금지, 집필 금지 등의 철폐)

5. 이들의 연령은 70 전후로 설사 사상성이 있다 하더라도 옛 사상이 현시점에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이며, 또 육고로 찌들은 늙은 몸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심히 의아할 뿐, 즉시 석방해도 사회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6. 반정부, 반체제 자체를 북한과 연계하여 무조건 사상전향하라는 것은 낡센스입니다. 이러한 인사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재판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거기에도 사상전향까지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석방 후 보호관찰법으로 항시 감시 속에 있어야 하는 상황도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II. 수형자의 생활처우

(1) 감방

수형자가 기거하는 감방은 독거감방, 혼거감방, 징벌감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치범은 출역장에 나가서 노동하는 자 이외에는 운동과 連出 이외 24시간 감방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주로 독거감방, 때로는 징벌감방(징벌

없이도)입니다. 처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혼거 감방 생활도 있습니다.

정치범이 기거하는 특별 사용의 독거감방은 사동 전체가 교도소 담 안에서 또 담을 쌓은 지역에 있고, 폭 1 m, 길이 2 m, 천정높이 2 m인 방이고, 문이 있어서 변소와 격리되어 있는데 크기는 사방 1m, 사기변기가 대개 있고 더러는 콘크리트 바닥에 지름 7cm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는 곳도 있습니다. 출입문은 철문, 밖에서 눈높이쯤에 가로 30cm 정도의 좁다란 시찰구와 아래 사방 20cm 정도의 배식구가 있으며, 시찰구와 배식구는 밖에서 닫아 걸어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변소 바깥편 목높이 위에 사방 90cm 정도의 창문이 철창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72년 때 전향소동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있자 이 창문틀을 촘촘한 철망으로 가려져서 창틀 넘어 철창에 밧줄을 걸어 목을 매다는 것을 방지하도록 만들었는데 공기소통을 방해해서 변소의 악취가 창문으로 빠져 나갈 수 없습니다. 83년 대투쟁 때 이 철망은 철거되었습니다. 감방의 배기통은 없어서 시찰구와 배식구를 밖에서 잠그면 변소 변기통에서 나오는 독기가 방안에 가득차서 고통이 여간 아닙니다.

교도소 당국과 갈등이 생기면 교도소장의 명령으로 이 시찰구, 배식구를 걸어 잠그어서 이중으로 고통을 줍니다.

징벌감방은 변소가 없고 방안 구석에 콘크리트 바닥이 있어서 지름 7cm 정도의 구멍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바깥창문틀에 합판 못으로 쳐서 빛도 가리면 캄캄한 감방에 갇히게 됩니다.

혼거감방은 넓이 4.5평(대전은 1.6평?)에 변소가 붙어 있고 또 창문틀도 허리높이에서 넓직해서 양편으로 환기도 잘 됩니다. (대전교도소의 혼거감방은 이와 다릅니다. 대전교도소의 경우는 별도로 언급하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독거감방에서 그리고 징벌받은 일도 없이 징벌감방에서 만 4년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감방에서 24시간 중 운동시간 30분(나중에는 1시간, 1시간 30분) 이외 산다면 여간한 정신력이 아니고서는 한두 해만에 정신이상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정치범은 양심을 지키고 독서와 명상으로 하루를 그런 속에서 계획성 있게 삽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을 아껴 냅니다.

전구는 60와트짜리 백열등입니다. 그런데 광주교도소의 최 모 소장은 전기요금에 많이 든다며 "징역사는 놈이 책은 왜 보는가, 여기가 공부방인 줄 아는가" 하면서 20와트로 낮추는 통에 많은 사람이 시력을 상하게 되었습니다.

(2) 식사

처음 형이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 이감되어 일년간, 다시 광주교도소로 이감하여 1983년 박관현군의 사망 후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으로 처우개선이 이루어진 1984년 말까지 3년간의 열악한 식사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주교도소의 경우, 주식인 쌀, 보리, 콩의 비율이 3:5:2인 콩밥은 모두가 몇년씩 묵은 곡식으로 아무 영양도 되기 어려운 것이었고 이것도 때로는 모래가 섞히고 이를 상하게 했으며, 부식은 썩어서 줄기만 남은 들깨 잎사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때로는 구더기도 함께 썩진 생선, 줄기가 역세어서 씹기 어려운 미역국(이것도 때로는 담배꽂초 등이 섞인 적이 있었다), 썩어서 능그척거리는 소금, 고추가루만 뿌린 김치, 이러한 열악한 부식으로 재소자 대부분은 제모습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주식은 정부창고에서 가져오고, 부식은 3개월마다 입찰에 의해 한꺼번에 창고에 입고하여 석 달 동안 재소자에게 지급하였으니 마지막 한달은 그 부패 정도가 극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부식의 열악한 정도는 당시의 소장의 처우방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때로 청렴한 소장이 오면 부식의 질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예로 황돈, 강정구 소장의 경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장 열악한 경우는 원모, 최모 소장의 경우였습니다. 열악한 부식을 주던 소장들은 모두 영전해가니 가렴주구와 영전과의 상관관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이 석방된 88년까지도 마찬가지로 인식되었습니다.

1983년 10월부터 박관현군의 사망을 몰고 오게 한 처우개선투쟁은 정치범이 있는 광주, 전주, 대구, 대전교도소에서 불같이 일어나, 1983년 12월부터는 소장의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었고 이때부터 부식구입체제와 취사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서 부식이 괄목할 만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부식의 자체시장구입이 이루어져서 싱싱한 부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도 열악한 통조림, 장아찌 등은 여전히 있습니다.

통조림, 장아찌는 교도소 부식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중소약덕공장에서 만든 것인데 (예: 함평에 있는 냉동공장, 기타 새마을공장 등) 아마 이권관계가 개재되어 소장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제도적 부패가 있다면 조사하여 철저히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984년부터는 주부식처우는 괄목할만하게 개선되어 재소자의 대부분은 건강한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때로는 권위주의를 내세우는 소장이 오면 부식의 질은 형편없이 나빠집니다. 우리들 뿐만 아니고 근무하는 교관들의

부식도 더욱 나빠집니다. 대구교도소의 경우 정모소장이 부임하고 난 후 부식처우가 점점 열악해지더니 교도소 직원까지도 급식을 거부하는 소동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은 얼마 후 영전되어 갔습니다. 정말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피복, 침구

피복, 침구류는 1983년까지는 교도소 자체에서 생산함으로써 여러가지 부정이 개재하여 치수미달, 분량 미달로 재소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고 1984년부터는 중앙공급이 이루어져 현격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예산을 각 교도소에 직접 영달하지 않고 물탕으로 공급하게 되었으므로 치수미달이 현저하게 개선됨으로써 비교적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나 신발, 양말류는 치수나 품질이 지극히 열악합니다. 이것은 역시 중소 약덕기업과 공급계약을 맺는 듯 경제적으로 낭비가 심합니다. 여기에도 항상 이권관계가 개재되는 듯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철저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기타 지급품

기타 지급품은 치약, 칫솔, 비누류 등인데 규정상으로는 1개월에 한 개씩 지급해야 하나, 1983년까지는 일 년에 한두 번이었고, 1984년부터는 규정대로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평균 2개월에 한 번꼴, 재소자의 항의나, 검열이 올때

좁으면 잘 지급합니다. 이것도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중앙에서 물량을 공급하여 교도소 측의 부정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5) 문화생활

신문, 잡지구독은 금지되어오다가 1988년 12월부터 일부 해제되었습니다. 갇힌 사람은 외부의 소식을 그리워하는 것이 상정입니다. 이러한 정확한 소식이 두절됨으로써 교도소 안에서는 온갖 희망적 내지 절망적인 투머가 횡행하여 재소자의 불안감을 부채질합니다.

88년 12월부터 신문, 잡지 구독이 허용되자 재소자들은 훨씬 명랑해졌고 뜯소문을 주고받는 데 바쁜 나날은 없어지고 분위기가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정치범에게 가장 큰 타격은 집필금지입니다. 교도소 당국은 집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재소자가 몰래 밀서로 교도소 당국의 부정 불법을 가족이나 사회에 고발하여 교도소 당국에게 곤경을 주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도소 당국은 집필을 자유롭게 하면 밀서로써 재소자끼리, 불법(탈주 등)을 계획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집단탈출을 기도한 예에서 밀서로 연락한 예는 없고 또 그것은 증거를 남기기 때문에 그런 연락방법을 이용 할 리가 없습니다.

정치범은 거의가 지식계급입니다. 밥 한 끼 덜 먹더라도 책과 노트가 필요합니다. 실제 나의 10년 영어생활 중 가장 큰 타격이 집필금지였습니다. 정치범 중에는 시인, 문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들의 감정을 작품으로 쓰기

원합니다. 이런 작품이 밖에 나가서 반정부적 영향이 있을까 두려워하는데
범법이 아닌 이상 양심의 자유는 억압해서는 안될 것이고 집필을 금지해서
양심을 짓밟는 처사는 봉건제도에서도 없었던 것이며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정치범에게는 집필의 자유가 주어져서 그들의 인간성이 유린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6) 운동과 목욕

정치범의 경우에는, 1983년까지는 단독으로 격리되는 소위 부채살 운동장에서
운동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미결시에는 서로 밀통하여 증거인멸을 한다고 해서 부채살
운동장에서 격리운동을 시켰는데 이는 이치에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확정수가 된 사상범을 단독 격리운동을 시킨다는 것은 탄압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 교도소의 경우는 1983년 11월부터는 부채살운동장의 칸막이를 철거하게
하였는데, 대전교도소에서는 아직도 여전합니다.

정치범에게도 넓은 운동장에서 여러가지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충분한 시간으로
자유롭게 운동하도록 해서 심신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목욕은 적어도 1주일 1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각 교도소의
목욕시설이 협소하므로 목욕시간이 지극히 짧습니다. 30분에서 집합시간,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면 실제 목욕시간은 20분만, 한꺼번에 50~150명 정도로 앉을

자리조차 없고, 물은 7,80도로 계란이 삶기는 지경이며, 열탕을 떠서 짙어바르다가 "이제 그만" 소리에 한둥 만둥, 소란과 아우성으로 뒤범벅입니다.

정치범에게는 1984년부터 다소 긴 시간과 물온도를 적절하게 해주는데 이것을 얻는 데는 피나는 투쟁이 있었습니다.

대전교도소의 경우는 유독 심합니다. 열탕을 짙어 바르는 수많은 재소자가 자욱한 김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고를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85년에는 한 사람이 열탕에 빠졌는데 워낙 뜨거운지라 구할 수가 없어서 삶겨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억울한 사람의 뒤치닥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7)자변구매물

재소자들의 자기 변제 구매물에는 주로 간식류, 내의류, 세면구, 자변의약품, 영양제 등이 있습니다. 재소자생활에서 최소한의 조건은 관변으로 지급되지만 생활을 좀 여유있게 하는데는 자변구매물로 보충합니다.

1985년까지는 교도소내에서 국수, 찌빡 등을 제조판매했으나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철폐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외부제조로 들어오는데 교도소측 임의대로 외부상인과 계약하여 매우 불량하고 비싼 가격이고, 이것 역시 부정의 온상이 되어서, 이제는 중앙구매제도로 바뀌어져서 이윤을 교도소 직원 후생으로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매우 합리적이긴 하지만 재소자로 인하여 생긴 이윤을 재소자에게로 돌리지 않고 교도소직원 후생으로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자변의약품, 영양제는 의무과에서 취급하는데 값이 매우 싸서 재소자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변의약품의 경우, 이것을 악용하여 의무과에서 치료를 자변 의약품에 의지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교도소의 의무과장은 의사를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우는 서기관의 봉급으로 대우함으로, 사실상 의사로서 그 직에 전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일만 근무하는 것이 상례이고 그것도 오전만 근무하는 곳도 있습니다. 의사가 없는 기간에는 간병부가 있어서 환자처리를 합니다.

처방은 교도소 교사가 주로 맡아 합니다. 간병부 중에는 의사도 터러 있고 상당히 의술에 능한, 오히려 의무과장보다 능한 사람이 있을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딱 다행입니다.

의무과장은 환자처리를 매우 무성의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시기를 놓쳐 인명을 상실하는 수도 있습니다.

광주 교도소의 김모 의무과장은 무사안일과 무성의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당국에게는 매우 성실하게 보였는지 청백리상을 받았읍니다.

이 자가 두 달도 못되는 사이에 정치범인 환자를 불성실하게 치료해서 세 사람이나 병사에서 그냥 죽도록 방기하였읍니다. 결국 이 의무과장은 온 재소자의 지탄을 받아 거센 저항을 받게 되자 당국은 사표를 수리하고 말았읍니다. 한 교도소에 3천명 전후가 되는 인원에 의무시설과 의사배치가 이러니 재소자는 질병이 생겨도 버림받고 있는 셈입니다.

대전교도소의 경우 의무과 모교사가 개인이 시내에서 약방을 경영하는데 이 약방을 통해서 구입하므로 여러가지 의혹이 개재되고 있다는 말이 재소자들에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구입으로 해서 재소자가 원하는 의약품,

영양제를 원하는 대로 값싸게 판매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개소자의 생활 실태에서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소자의 구급시설인 만큼, 구급조건 이외는 위생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특히 환기, 채광, 방습) 시설을 개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소자의 부식은 예산을 적절하게 측정해서 교도소에 지급하여, 자체 조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식의 식단 및 재료 선택은 개소자의 대표와 상의해서 정할 것이며 밑반찬이라 해서 외부에서 구입할 것이 아니라, 소내에서 직접 철저히 위생감독하여 제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부식 이외의 모든 관급품은 중앙공급으로 부정을 막고 행정법 시행령에 따라 정확히 지급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자변구매물에 대해서 의약품, 영양제까지 중앙구입제도를 철저히 시행하여 값싸고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공급물품은 검소하고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개소자에게 신문, 잡지 구독의 자유를 인정하고 특히 정치범에게는 집필의 자유를 보장하여 그들의 내면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나아가서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해야 합니다.

6. 재소자, 특히 정치범에게 독거운동은 폐지되어야 하고 넓은 운동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어 운동하도록 시설과 운동기구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7. 목욕시설을 확대하여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온도의 욕탕에서 목욕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열탕으로 위험한 사고의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8. 교도소마다 병원시설을 완비하고 전담의사를 배치하여 정당한 의료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전체 교도소의 환자를 총괄하는 교도소의료원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III. 교도소 교도관의 실태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는데 구금확보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보안과 직원과 정서순화 및 교육을 담당하는 교무과 직원이 있습니다. 그 밖에 교도소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과 직원이 있어서, 재소자의 편의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직급과 직종에 따라, 위로는 교도소 소장(교정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부소장(교정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각과 과장(교정사무관), 하부직원이 있어서 직접 재소자를 담당합니다.

또 한편으로 교무과 에는 사복으로 근무하면서 정치범을 담당하는 교회사가 있는데 직급은 주임과 계장급이고 일반재소자는 정복교도관인 교사와 교도가

주로 담당하며 이들 교무과를 총괄하는 교무과장이 있습니다.

(1) 교도소장

교도소장은 물론 교도소의 모든 책임을 지고 총괄하여 행형법 및 그 시행령에서 '...할 수 있다'로 명시된 대로 교도소내에서는 재소자는 물론 직원 전체에 군림하여 막강한 제왕과 같은 권력을 행사합니다.

행형법 및 그 시행령에서 소장의 권리와 의무 중 대부분 '...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해도 괜찮게 되어있습니다. '...해야한다'는 것은 거의 없어서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인권의 무풍지대에서 일제때부터 '간수'로 출발해서 또는 그 분위기에서 자라서 자유당시절, 유신시절을 거쳐왔기 때문에 무사안일과 무소불능의 권위에 폭 짚은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한 한 안하고 지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려면 예산도 들고 일도 많아서 자연히 그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교도소장은 재소자뿐만아니라 거느리고 있는 모든 교도관에게도 무소불능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길들여온 교도소 분위기는 비인간적 상하 체계가 엄정하여 과장급마저 자유로이 의견을 낼 수없고 모든 직원이 명령에만 복종을 할 뿐입니다.

더러 인간성이 풍부한 교도소장이 있기는 한데 그러한 소장이 있을 때는 재소자의 처우도 밝아질 뿐만 아니라 교도관들도 근무조건이 개선됩니다. 반면 지독하게 권위주의적인 소장이 있을 때는 재소자는 물론 교도관들도 처지가

어려워 집니다.

교도소에서는 교도소장 이외에는 누구나 무권력 한 존재일 뿐이고 모든 것은 소장이 단독으로 처리하도록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물론 상부의 지시에 충실해야 한다는 제한도 있지만.

(2) 간부

상급간부와 하급간부로 구분되는데 상급간부는 부소장, 각과장이고 하급간부는 계장과 주임입니다.

이들 간부는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교도로부터 승진에 승진을 해서 간부로 올라온 나이 많은 간부(승진간부)와 바로 교도간부로 취임한 간부입니다.

승진간부는 교도소의 권위주의와 무사안일주의에 타성에 젖어 재소자를 대하는데 원칙과 논리가 결여되어 억압적으로 대하려 합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극도로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기본적 식견이 갖추어지고 자기직책의 공지를 가지려고 하는 젊은 간부는 비교적 원칙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명령계통이 엄정한 교도소의 직장 분위기로 해서 항상 고민합니다. 이들은 행형법과 그 시행령에 충실하면서도 '...할 수 있다'를 실현해 볼 의욕이 다소 있습니다만 현 교도소 체제상 어쩔 수 없어서 실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2) 교사, 교도

이 직급의 직원은 재소자와 직접 대하여 교도행정 및 구금확보 업무를 시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직급의 직원은 아무 권리도 없고 자의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명령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근무조건은 극도로 열악하여 평균근무시간이 하루 14,5시간정도 정확히 2교대제로 하면 12시간이겠으나, 비번의 경우에도 2일내지 3일에 한 번 꼴로 비번 근무에 시달립니다. 이들에게는 권위란 전무하고 책임만이 있어서 걸핏하면 경위서를 써내고 감봉에 견책에 파면입니다.

사고가 나면 상급자는 별이 가볍고 모든 책임은 교사와 교도, 특히 교도에게 돌아 갑니다. 상급자는 견책정도로 끝나더라도 최하급자인 교도는 파면입니다. 내가 아는 한 모든 직업 중에서 가장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는 직업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는 스스로의 교양을 쌓을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뿐더러 간부와 재소자의 시달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무사안일과 무의욕으로 살아가니 재소자에 대한 교화란 허울 뿐일 수밖에 없고, 재소자에 대한 권위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직업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조건에서 금지가 일어날 수없고 그 결과 재소자는 다만 구금 되어있을 뿐 이들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4) 교회사

이 직급은 정치범과 매우 관계가 밀접합니다.

이 교회사 제도는 재소자의 불안을 씻어주고 생의 의욕을 불어넣어 정서를

순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72년 이후 '사상전향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각 교도소에 배치하였던 것입니다.

이 교회사의 모집 목적이 교회사의 본래의 직무와는 판이하므로 강압적으로 양심을 배신하게 하는 지극히 반인권적인 것입니다.

이들은 72년도부터 10년 넘어 정치범을 공갈, 협박, 회유, 사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고문을 다하여 반정부 인사와 반체제 인사를 가리지 않고 소위 전향공작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80년 후반부터 교도소 안에도 인권을 주장하게 되고 재소자의 항의에 부닥쳐서 과거와 같이 노골적인 협박과 고문은 없어졌으나, 근 10년간을 남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데 폭 젖어온 탓으로 그들 대부분은 그들 인간성에 스스로 상처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정치범 관리의 막강한 권리가 주어져 있고, 이들은 직접 안기부에 연결되어 있어서 교도소 직원이라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정치범의 독서, 서신검열을 맡고 있어서 그들의 임의로 줄 수도 안 줄수도 있는 권한을 심분발휘하여 정치범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줍니다. 그들의 좁고 비뚤은 식견으로 정치범들은 온갖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사들은 정치범으로부터 '사상전향서'를 받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쓰며,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처우를 차별하고 (소위 사회참관, 가족간담회 대상에서 제외하기, 서책차입에 대한 차별), 가족과 이간질하며 가능하지도 않은 처우를 약속하고 사기치기,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어 정신적으로 고통주기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야비하고 저열한 행동을 마구합니다.

이들 교회사들은 교도소 직원공동체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가장

근무조건이 좋으면서도 최하직급이 주임급이며 따라서 간부행세를 하고 교사, 교도들에게까지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사제도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잔재로서 지금도 이것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으니 교도소의 개혁은 전혀되고 있지 않다는 산 증거가 되겠습니다.

(5) 경비교도대

1985년까지는 교도관을 보조하는 재소자로서 독보권을 주고 있는 '지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지도'는 재소자의 생활지도, 규율지도를 맡고 교도간의 재소자 계호에 보조하기도 하며 사무처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도'는 대개 폭력범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조직은 사회의 폭력조직과 보이지 않는 연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무지하고 사나우며 교도소내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는데도 교도소당국은 이를 어느 정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또 정치범이 처우개선을 요구하여 투쟁할 때는 이들이 탄압의 앞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범을 탄압할 때는 교도소 혹은 정치범을 이들 감방에 넣어 줍니다. 그래서 온갖 모욕과 집단 구타를 당하고 그들은 갇힌 자로서 가지는 스트레스를 풀니다.

또 이들 '지도'는 교도소내의 범칙의 온상이기도 했습니다. 담배밀매, 부정거래. 이러한 범칙은 하급교도관의 지휘 내지 묵인 하에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1985년 10월(?)인가 청주교도소에서 이들 지도들이 집단난동을 일으켰습니다. 믿는 강아지에게 발물린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대신해서 교도소에 출현한 것이 '경비교도대(경교대)'입니다. 당초 이 '경교대'는 교도소의 외곽경비를 위해서 창설되었고 따라서 하급교도관의 외곽경비의 인원을 재소자 계호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병역의무를 이 곳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이 '경교대'의 역할이 교도소안에까지 미쳐서, 이제는 교도관의 계호업무를 보조하고, 사무처리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대초의 청년인데다 재소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으로 재소자와 자주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뇌'된 탓인 지 정치범을 무조건 '공산당', '빨갱이'로 여기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병이 그렇습니다. 근무기간이 쌓이면 정치범을 보는 눈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들은 20대초의 청년인지라 순진해서 재소자 중 전과가 많고 노련한 재소자들의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도소내의 각종 범칙 및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어서 젊고 순진한 그들의 심성을 크게 해치고 있음을 볼 때 몹시 안타깝습니다. 하루 빨리 이들과 재소자들의 접촉을 막고 처음의 설치의도대로 외곽경비에만 전념하도록 해서 이들의 순진한 심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범에 대한 그릇된 세뇌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교도관의 실태에서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1. 현행 행형법 및 그 시행령 중 재소자 처우규정으로 명시된 소장의 권한인 "...할 수 있다."는 것보다 "... 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폭 의무조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정신 아래에서는 재소자도 최소한의 인권과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고 간부교도관 및 하급교도관의 근무조건도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과거 일제시대 및 독재정권시대의 권위주의와 무사안일주의 및 해바라기주의(상급자 눈치보기)의 타성을 과감히 혁신하는 교도소 행정체제를 확립하도록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교도기관을 전문기관으로 독립시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재소자의 참다운 교화에 역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교도관의 근무조건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3. 현재와 같은 교회사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양심의 자유는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회사는 본래의 의무인 재소자의 심성을 순화시키는 것에 한할 것이고 모든 정치적 탄압의 하수인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4. 경비교도대는 재소자와의 접촉을 단절시켜 그들의 순진한 심성을 보호해야 할 것이고 재소자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재소자의 자치적 생활지도와 규율지도는 각 작업장의 작업반장 중심으로 하는 것이 재소자의 심성에 안정을 줄 것이며 효율적일 것입니다.

IV. 각종 재소자의 범칙 및 비리

교도소의 재소자들은 사회와 엄격하게 격리되어 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구속되어 있어서 이 구속으로부터 풀려나려는 인간적 본능으로 교도소의 구속적 규율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현행 행형은 재소자의 신체구속에다 아울러 정서적 구속까지 이르고 있어서 각종 범칙이 횡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면에서의 범칙은 흡연, 도박이 있습니다.

재소자는 일정한 제한된 곳에 수용되어 있고 사회와 격리되어 재소자의 사회적, 경제적 신분이 은폐되어 획일적 취급을 받는 상황하에 탈피하려는 잠재의식의 발로인지 자기과시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면에서 부정물품, 수발이라는 범칙이 횡행합니다.

80년대 상반기까지만 해도 재소자의 이러한 심리상태에서 나온 욕구를 이용한 교도소직원의 각종 비리가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이러한 비리는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 흡연

흡연은 교도소내에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소자의 흡연은 은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흡연범칙이 발각될 때는 거의가 교도관이 개재되어 있어서 파면되는 일이 많습니다.

일반재소자는 하루 종일 흡연할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흡연을

위해서라면 어떤 범칙도 서슴지 않습니다. 따라서 흡연은 모든 범칙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흡연 때문에 취장의 부식물이 횡류되고 양재공장의 부정물품 제작이 이루어 지고 영치물을 수탈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흡연은 재소자의 정서순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감방 속의 재소자의 갈등도 담배연기 한 모금에 해소되고 교도관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따라서 영리한 교도관은 자기는 담배범칙은 하지 않아도 흡연을 모르는 재하는 슬기를 알고 있습니다. 재소자의 정서순화를 위해서 흡연을 허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므로써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한 것을 보았습니다. 몰래 담배를 피움으로써 불씨가 비밀리에 보관되고 흡연범칙으로 기인하는보다 더 악질적인 범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도관에 대한 금전적 유혹이 발생하고 있음을 봅니다.

(2) 부정물품

부정물품으로는 취사장에 흘러나오는 육류 등 음식물, 양재공장에서 나오는 범칙주의, 영치되는 의류 및 신발 등이 있습니다.

부정음식물과 범칙수의는 재소자끼리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치품에 대해서는 교도관이 개재됩니다. 이러한 부정물품은 재소자 중 특정인들의 자기과시의 심리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취사장에서 흘러나오는 육류를 착복하고, 양재공장에서 잘 재단되고 제조된 수의를 입고, 5.6만원이나하는 스포츠운동화를 신고 정구라켓을 들고 으시대는

'잘나가는 사람'은 재소자들은 부러워합니다.

이러하나 부정물품은 교도관이 개재될 때는 바깥 가족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정실관계가 개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소자끼리 부정물품거래에는 교도소의 자변구매물로서 이루어집니다. 화폐거래가 없는 교도소에서는 물물교환으로 이루어지나 때로는 구매물 중에서 화폐대행하는 품목이 자연적으로 정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담배한개피=마른 오징어 10마리, 범칙수의=마른 오징어 15마리, 돼지고기 한근=마른 오징어 10마리 등, 마른 오징어가 화폐대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화폐대행은 1980년대 전반까지는 대체로 미원, 마가린이 되었다가(부식이 나쁜 것을 반영), 80년대 후반부터는 런닝, 반츠로 요즘은 마른 오징어, 땅콩 등으로 변천되었습니다.

(3) 도박

감방생활의 심심풀이로 시작하는 것이 도박으로 발전하는 수가 있습니다. 도박에도 윗, 장기, 바둑도 있으나 이 경우는 대개가 심심풀이이고 판돈이라야 사탕, 오징어, 땅콩 정도로 그치지만, 화투, 포커는 도박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재소자중에서 손재주가 있는 자가 많이 있어서 두꺼운 판지에 화투와 트럼프를 그려서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판돈 거래는 화폐대행이 되는 물품이나 외부에서 부정차입된 의류, 운동화, 고급담요 등 입니다. 하루 밤사이에 몇만이나 되는 물품을 몽땅 잃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싸움이 벌어져서 좁은 감방에서 폭행사고가 일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감방내에서 폭행사고는 매우 위험합니다.

웃, 장기, 바둑의 오락정도는 교도소에서도 인정하고 있지만 기타의 도박행위는 엄중히 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박은 동거자의 경계 속에서 엄밀히 이루어지고 있고 폭행사고가 일어날 때라야 발각됩니다.

(4) 수발

'수발'이라는 것에는 재소자끼리하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에게 하는 제반생활 서비스가 있고, 재소자가 교도관에게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반재소자로서 취역수는 공장작업반별로, 미취역자는 감방별로 생활합니다. 신입재소자가 들어오면 경제적 능력 정도에 따라 '개털'과 '범털'로 구별됩니다.

각 작업반, 감방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범털'을 자연 선호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능력이 없고 외로운 '개털'은 싫어합니다. 모두가 '범털'이 작업반, 감방의 경제적 부담에 크게 도움을 줍니다. 대신 이 '범털'의 수발은 '개털'이 맡게 되어 경제적 도움을 받게되고 각기의 소공동체의 성원이 그런대로 고르게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배경도 튼튼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범털'은 때로는 심한 수발을 요구하는 수도 있고 인색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때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소자가 교도관에게 하는 수많은 수발은 1984년 이후부터는 공공연한 것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교도관도 재소자와 다른 입장인긴 하나 같이 생활하고 있으므로 약자인 재소자가 인정적으로 약간의 수발을 합니다. 주로 '개털'이 세탁등으로 도움을 줍니다.

개중에는 질나쁜 교도관이 있어서 영양제, 음료수, 기호품 심지어는 안마까지 요구합니다. 그런 경우 담당의 재소자들은 심한 경제적 손실과 인간적 수모까지 당해야 합니다.

이 '수발' 문제는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경우는 상호협동으로 장려한 일이지만 정도가 지나칠 때는 일종의 수탈이 되고 인간성파괴가 됩니다. 특히 재소자가 교도관에게 수발하는 일은 일체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재소자의 범칙 및 교도관의 비리를 관찰한 결과

1. 재소자의 흡연은 방화 및 화재의 위험을 철저히 예방하는 시설과 제도를 만들어서 재소자에게 허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재소자로 하여금 불안한 정서를 안정시키고 교도소내의 각종 비리의 원인을 크게 없애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영치할 수 있는 품목을 크게 확대하고 자유롭게 해 주어서 재소자의 수형생활에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나 사치성 고가 품목은 철저히 제한해서 재소자간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게 하는 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화감은 재소자의 자해의 원인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3. 재소자의 관급수의를 재단과 재봉을 깔끔하게 해서 구겨진 의복을 지급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음식품의 횡류(이것은 주로

담배와 관련)를 감시해야 합니다.

4. 도박벽이 있는 재소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서 폭행사고의 원인을 없애야 합니다.

5. 교도관에 대한 일체의 '수발'을 금지시키고 재소자끼리의 안마등 비인간적인 수발을 금지되어야 합니다.

V. 대전교도소의 상태

대전교도소는 1985년 봄에 동양 제1의 교도소로 신축되었습니다. 지상3층, 지하1층의 4층건물로 건물마다 밀폐된 데다 또한 통로로 연결되어 모든 재소자들이 햇볕과 바깥 바람 한 번 쏘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대전 교도소의 시설과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인간적이고 전근대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1) 시설

감방은 주로 독거실이 많고 합방거실은 대개가 1.6평 정도의 작은 방인데 4명이면 꼭차는 방을 5명, 6명 심지어 7명까지 수용합니다.

특히 전국에서 문제 재소자들(말하자면 탄압에 항거하는 일반재소자 및